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2년 10월 20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년 10월 7일, 금천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22년 10월 7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39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2년 10월 20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송오섭 행정안전국장)

### 가. 개정이유

- 「주민투표법」이 2022. 4. 26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주민투표권에 재외국민 내용 삭제(안 제2조 및 제8조)
-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상위법에 기규정된 연령 내용 삭제(안 제3조)
- 주민투표 대상이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민투표 대상 관련 규정 삭제(안 제4조 삭제)
- 전자서명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청구인 서명부 내용 추가(안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)

- 구청장이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통·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 서명부 작성 방법 규정(안 제8조제2항 단서 신설)
- 주민투표 청구 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중복 내용 삭제(안 제13조)
- 그 밖에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별지 서식 수정(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7호서식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 및 주민투표 대상 등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작성되고 제출된 안건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